

=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2. 1. - - - - - 사하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. 2. 1
- 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(07. 2. 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임석진 세무과장)**가. 제안이유**

-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를 「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근거하여 징수 하였으나, 부산시에서 해당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(07.1.31공포, 07.3.1시행)하였으므로
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별표 1 구분란의 【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확인 등】에 제12호 신고체육시설업을 신설
·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 20,000원

3. 관계법령

-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, 조례 별표1의 항목표기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으로
-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1999년 1월 18일 「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업무 처리 권한이 시·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위임 되었으나, 처리수수료는 「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근거를 두고 징수해 오다
부산광역시에서 2007년 1월 31일 공포한 개정조례에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「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- 항목오류 정정내용은 별표1 【인가·허가, 신고·신고 등록, 지정·확인 등】의 9호 「수산관계」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9-1호 「부동산중개업 관계」 와 9-2호 「석유판매업 관계」 는 「수산관계」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

- 9-1호는 10호로
 - 9-2호는 11호로, 독립된 항목번호를 부여하고
 - 12호에는 신고체육시설업을 신설하면서
 - 10호는 13호로 항목번호를 순연시키는 것임
- 이상과 같이, 본 개정안은 신고체육시설업의 처리권한과 수수료 징수 근거를 일치시키고, 일부 잘못 표기된 항목번호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